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1. 6. 9.>

[]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
[]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

기금법인	기금법인 명칭	기금인가번호
	대표자 성명	직책
	주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
변경내용	변경일	기본재산 총액(원)		변경금액(원)
		변경 전	변경 후	
	변경 사유			

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35조제2항·제5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기금법인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